

---

# 외환시장 구조개선 추진 상황 점검 및 주요 과제

---

2024. 6. 4.

관계기관 합동

# 목 차

I. 추진 현황 .....	1
II. 주요 과제별 추진 방안 .....	2
① 제3자 외환거래 활성화 .....	2
② RFI의 외전망 보고부담 경감 .....	3
③ 국채통합계좌 등 채권거래 편의성 제고 .....	4
④ RFI 자금운용 방식의 탄력적 허용 .....	5

## I. 추진 현황

### ① (국내 외환시장 개방) '24.1월부터 정부에 RFI\*로 등록된 외국 금융기관에게 우리 외환시장 참여를 공식 허용

\*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: 국내 외환시장에서 직접 거래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된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

- (RFI 등록) 런던·뉴욕·싱가폴·홍콩 등 주요 글로벌 금융허브에 소재한 24개 외국 금융기관이 RFI로 등록하여 거래 개시
- (모니터링) 은행간 거래시 국내 인가 외국환중개회사 경유 의무화

### ② (개장시간 대폭 연장) '24.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(09:00~15:30)을 런던 장 마감시간을 고려하여 새벽 2시까지 연장

- (시범거래) 체결, 확인·결제 점검을 위해 연장시간대 8차례 시범거래\*를 실시하였으며, 현재까지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

\* 27개 금융기관(국내 은행 15개, 증권사 6개, RFI 6개) 참여

- (시장조성) 금융기관의 적극적 시장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선도 은행\* 선정시 호가 조성거래, 연장시간 거래에 가중치 부여

\* 국내 은행 중 거래 실적이 우수한 7개 은행을 1년 단위로 선정, 건전성부담금 감면

- (회계기준) 글로벌 정합성, 업무처리 효율성을 위해 다음날(T+1일) 00:00~02:00 외환거래를 당일(T일) 처리 가능하도록 허용

### ③ (선진수준 인프라 구축) 對고객 시장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제3자 외환거래를 허용하고 전자거래 인프라 확충 노력

- (전자거래 인프라) RFI 거래를 위한 API·WTS 완비
- (제3자 외환거래)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은행과의 외환거래 및 증권결제 실패 방지를 위한 일시적 원화차입(Overdraft) 허용
- (CLS) 거래시간 연장 대응을 위해 CLS 공동망 운영 연장 예정

## II. 주요 과제별 추진 방안

- ◇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제고하기 위해 ①세부 규제·관행까지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고, ②실수요 기반 확보 방안 마련
- ◇ 일회성 제도개선으로 끝내지 않고, 투자자들이 우리 외환시장의 변화를 완전히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 보완

### ① 「제3자 외환거래 가이드라인」 既제정 → 성공사례 지속 발굴·홍보

※ 투자자가 본인 계좌가 없는 금융기관과 국내 수탁은행 중 경쟁적 가격을 제공하는 기관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환전비용 절감  
(RFI는 국내 고객 계좌개설이 불가능 → 제3자 은행으로만 외환거래 참여)

기 존	개 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투자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국내 수탁은행이 제3자인 RFI 거래의 정보 입수 제한 → 결제 실패 가능성 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「가이드라인」 제정을 통해 RFI를 통한 거래의 자금결제 및 거래 정보 전달 오류가 최소화되도록 보완</li> </ul>

① (가이드라인 제정) RFI 외환거래에 관여하는 기관들\* 간에 거래 단계별로 수행해야 하는 절차를 명시하여 공표 (5.16일 既완료)

\* 자금·결제정보: 투자자 → RFI / 글로벌 수탁은행 → 대항기관 → 국내 수탁은행

② (모범사례 발굴) RFI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나리오의 제3자 외환거래 사례 지속 발굴

③ (경상거래 단계적 허용) 자본거래 안착 경과 보아 가며 허용 검토

#### < 제3자 외환거래 첫 공식 성공 사례 >

- ✓ (주체) 국민 싱가포르(외국인투자자), 도이치 런던(RFI)
- ✓ (일정) 5.10일(금) 거래 → 5.14일(화) 결제 완료 (근일물(Near))
- ✓ (목적) 국민 싱가포르 지점의 한국 국채 투자자금의 환리스크 헤지를 위해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FX스왑 만기를 연장(롤오버)
- ✓ (금액) 약 300억원

**② 모니터링 손실 최소화를 전제로 RFI의 외전망 보고부담 경감 추진**

**< RFI의 한은 외전망 보고서 목록 및 주요 개선 사항 >**

보고서명	보고 내용	주기	개선 사항
FX0028	RFI 원화차입 잔액	매월	제재 유예 연장
FX0029	RFI 원화 차입·상환 내역	매월	일중 원화차입 보고 유예, 제재 유예 연장
FX2101 <sup>1)</sup>	RFI FX 거래	T+2	제재 유예 연장
FX2111 <sup>1)2)</sup>	RFI 외환파생거래 건별 잔액	매월	
FX4410	일중 포지션현황	T+2	보고 유예
FX4420	일중 외환거래현황	T+2	

1) 비거주자와 거래시 고객명(IRC, LEI) 등 신원정보에 대해서는 보고 제외

2) RFI의 전체 선물환포지션(NDF 포지션 포함) 보고 유예

**① (제재 유예기간 확대)** RFI가 외전망 보고에 충분히 익숙해지도록 외전망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계도기간 연장(6월말→12월말)

**② (보고 주기 및 항목 완화)** RFI가 물리적으로 보고하기 어렵거나, 법적 제약에 따라 보고가 제한되는 사항에 대한 보고부담 경감 추진

1) 일일 보고의 부담을 감안하여, **보고주기 완화**(T+1일→T+2일)

2) RFI의 **선물환포지션**(NDF 포지션 포함) **보고 유예\***

\* NDF포지션: NDF 보고내용 확인을 위한 실효적인 검증 방법 부재  
선물환포지션: NDF 포지션을 제외하는 경우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치 저하

3) RFI의 비거주자 고객 신원·국적 등 보고의무를 면제하되, 국내 수탁은행이 보고하는 정보 등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

4) FX 거래 보고서의 재가공을 통해 생산가능한 일중 포지션·외환거래 현황 보고서는 보고 의무 자체를 유예

5) 국내 외국환은행의 사전 거래목적(주식/채권/파생) 보고 폐지

**③ (본점 포지션 집중시 보고부담 축소)** 장부에 거래 내역을 기장하여 재무적 책임이 발생하는 법인(예: 본점)으로 보고 의무 집중\*

\* (예) 취리히 투자자 물량을 런던에 있는 RFI가 은행간 시장에서 거래하고, 파리에 있는 본점 장부에 기장한 경우 본점에게만 모든 거래 보고 의무 부과

### 3 국채통합계좌 등 채권거래 원화결제 편의를 기축통화 수준으로 제고

※ 6.27일부터 유로클리어를 통한 국채통합계좌 거래 개시 예정

기 존	개 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채통합계좌를 통한 비거주자 장외 채권거래시 원화결제 불가</li> <li>국채통합계좌 통한 Repo 이자 상환, 결제 실패 보상지급 제한</li> <li>RFI는 현·선물환·외환스왑만 거래可 → 1년 이상 장기투자자 헤지 제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채통합계좌를 장외 채권거래시 원화결제 허용 + 사후 모니터링</li> <li>유로클리어 등의 거래확인을 전제로 이자상환 및 보상지급 허용</li> <li>장기투자자의 환헤지 수요를 고려하여 RFI의 CRS 거래 허용</li> </ul>

#### ① (국채통합계좌 내부 원화결제 허용)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장외 채권거래시 참가자 간 거래대금의 통합계좌 내 원화결제 허용

\* (예) 유로클리어 참가자인 A 은행이 다른 참가자 B 증권사에 KTB 매도  
→ B 증권사가 보유한 원화대금을 유로클리어 계좌로 송금하여 거래 완료

#### ② (국채통합계좌 통한 이자상환 및 보상지급 허용) 유로클리어 등의 “확인”을 전제로 이자상환 및 보상지급에 대한 원화결제 허용

- (이자상환) 유로클리어 내 비거주자 간 Repo 거래\*시,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원화로 지급받은 국채이자의 원화 상환 허용

\* 1) A 은행이 자금조달을 위해 KTB를 담보로 B 증권사와 Repo 거래 실시  
2) Repo 기간 발생하는 국채이자는 우선 소유권을 이전받은 B 증권사에 지급  
3) 경제 실질(담보)을 고려, Repo 계약시 B가 받은 국채이자를 A에게 다시 지급

- (보상지급) 매도인의 귀책으로 결제가 실패할 경우, 매수인이 받아야 했을 국채이자 배상에 대한 원화지급 허용

#### ③ (장기 채권투자자 편의 제고) 장기채권투자자의 안정적 환헤지 필요성을 감안하여, RFI의 비거주자에 대한 CRS 거래 허용 추진

\* 1년 이상의 채권투자자의 경우, 환헤지 및 이자흐름 일치를 위해 CRS 거래가 보편적이거나, 현재 RFI는 현물환·선물환·외환스왑(주로 1년 이내)만 거래 가능

4 RFI의 자금운용 방식을 모니터링 수단 확보 전제로 폭넓게 허용

기 존	개 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규모가 작은 지점에서 별도 원화 장부를 관리할 경우 리스크 부담</li> <li>RFI간 포지션 거래는 반드시 대행 기관 또는 중개사를 통해서만 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효율적 자금조달·관리를 위해 본점에 외환거래 포지션 집중</li> <li>24시간 거래를 위해 영업시간 따라 동일 그룹 RFI 간 포지션 이동 허용 (예: 싱가포르 → 런던 → 뉴욕)</li> </ul>

① (본점 포지션 집중 허용) 본점 장부로 거래하는 은행간 거래·영업 전담 지점의 원화계좌 개설 및 RFI 등록 부담 완화\*

\* 자세한 내용은 「Centralised Booking Model 적용 가이드라인」 참조

- 실제 장부를 활용·관리하는 법인만 국내 외국환은행에 업무용 원화 계좌를 개설해도 영업을 가능하도록 허용
- 영업만 전담하는 법인·지점은 사전신고 전제로 RFI 등록 면제

② (동일그룹 RFI 직거래 허용) 동일그룹 RFI 직거래를 허용하되, 모든 관련 법인의 RFI 등록 및 원화계좌 개설 의무 부과할 계획

※ 동일그룹 간 RFI 직거래 제한시 RFI간 NDF 거래 확대 유인 발생  
→ 직거래 허용은 오히려 NDF 거래 역내시장 흡수를 촉진하는 측면

③ (업무용계좌 인정 범위 확대) 자금·회계 분리 및 예치·처분 사유 통제를 전제로 자유원·투자전용계정의 업무용계좌 사용 허용

< RFI 자금운용 관련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>

- ✓ (외국 은행) RFI 대행기관이 아닌 서울지점(의무 수행 X)의 직거래 허용 여부  
→ 대행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직거래 허용
- ✓ (국내 은행) 국내은행 해외지점 RFI(예: KB 런던)의 거주자 거래 허용 여부  
→ 외국 RFI 영업제한(비거주자)을 고려, 국내은행 RFI도 거주자 물량 거래 제한